

국방부령

국 방 과 학 기 술 혁 신 촉 진 법 시 행 규 칙 제 정 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 방 부 (전 력 정 책 과)
연 월 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제정이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7163호, 2020. 3. 31. 제정, 2021. 4.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계적인 국방연구개발 기획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1)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국방기술기획서 작성 및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성과 분석 등 기획 절차 마련

2)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지원 업무 등을 명시하고,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성과 분석 및 보고 절차 마련

나.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안 제5조)

다. 산·학·연 주관 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이 보유한 개발성과물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에 기술지원을 의무화(안 제8조)

라. 국방분야의 효율적인 연구시설·장비 관리를 위해 시설·장비 정보의 수집, 관리, 제공 근거를 명시(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기체계 연구개발 기획 절차)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기획시 「방위사업법」 제15조부터 제17조의 절차를 따른다.

제3조(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기획 절차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매년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방기술기획서를 작성하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중·장기 국방과학기술 확보계획
2.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사업 중 다음 년도에 착수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목록
3.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사업은 다음 년도에 착수하는 연구개발 중점추진 분야의 목록

- ②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1항제1호의 중·장기 확보계획에 포함된 기술들에 대한 기획연구를 수행한다. 다만, 미래도전국방기술의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기획연구를 수행한다.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기획서를 작성할 때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등이 제기한 과제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참모본부가 과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군에서 제출한 과제 및 자체 도출한 과제를 종합하여 제출한다.
- ④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매년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의 개발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⑤ 국방과학연구소장은 매년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의 개발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성과분석 결과를 국방부, 합참, 각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타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기획 절차 등) 법 제2조제5항라목

의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기획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5조(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선정절차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조제5호 가목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단계별로 선정한다. 다만,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시기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으로 선정된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을 계속하여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이 요구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의 선정기준
3. 연구개발사업제안서의 작성기준 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자료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각군·국방과

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의 관계전문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사업제안서 평가팀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선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조(연구개발주관기관에 대한 개발시험평가의 지원)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조제5호가목과 나목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방위사업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발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이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기획 절차 등) ① 국방부장관은 체계적인 전력지원체계 획득을 위해 국방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성에 필요한 절차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과학적인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 및 확보를 위하여 법 제8조제6항의 국방기술품질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소요기획서(안) 작성 기술지원
2. 선행연구 수행
3. 기술 조사·분석
4. 소요결정 및 획득방법결정 지원
5. 군사요구도(구매요구서) 작성
6. 민간 우수기술·제품의 조사·분석

7.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 관리
8. 기술료 산정 및 징수
9.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10.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평가
11.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
12.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 국방부 장관은 「국방정보화 기반 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 정보화 신기술사업에 관하여 법 제8조제6항의 국방기술품질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방 ICT 융합사업 협력과제 발굴 및 기술기획
2. 국방 ICT 융합사업 성과관리, 품질관리 및 연구성과물 확산방안 검토

④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매년 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개발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지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으로 하여금 보유한 개발성과물을 활용하여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참

여기관에게 기술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국방기술품질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연구시설·장비 활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방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이 수행하는 연구시설·장비 활용 촉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국방 연구시설·장비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제1항에 따른 국방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제2항에 따른 국방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제공

제10조(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대상)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1. 군사전략 또는 전술에 이용되는 새로운 방산물자의 개발
2. 첨단 국방과학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국방과학기술의 개발
3. 방위산업에 이용되는 창의적인 소프트웨어의 개발
4. 기존 방산물자의 성능보다 월등한 성능의 방산물자의 개발

5. 방산물자 주요부품의 국산화개발

6.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

제11조(국방기술 통제목록의 작성)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영 제21조제2호의 기술이전 및 수출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3년마다 국방기술통제목록을 작성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방과학기술에 관하여 종전의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시행규칙의 개정) 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4조, 제26조, 제34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연구개발 또는”을 삭제한다.